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12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김준혁 · 김문수 · 김 윤
박희승 · 백혜련 · 염태영
이수진 · 이연희 · 정준호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초·중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계 부정 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중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1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4분의”를 “3분의”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대학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학교육기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임원) ①·② (생략)	제14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u>4분의 1</u>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 <u>3분의</u>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 ③ (생략)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대학교육기관</u> 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④ ----- -----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u>대학교육기관</u> ----- ----- ----- -----

